

창업지원 학사운영 내규

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7.6.19		16		
2	2018.6.15		17		
3	2020.3.9		18		
4	2023.1.16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창업지원 학사운영 내규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항공우주과학 중심의 다양한 학문분야 연구와 실용적 인재양성을 위해 창업지원에 필요한 학사운영의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창업지원을 위한 학사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제3조(정의) ① ‘창업교과’는 본교 및 타 대학교의 교과과정에 편성되어 개설되는 교과로 창업 및 창업준비활동 등 창업과 관련하여 개설된 교과목을 말한다

② ‘창업실습’은 창업동아리 활동과 같이 창업준비과정의 활동을 말하고 ‘창업현장실습’은 직접 창업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.

③ ‘창업대체학점’은 창업의식 함양 및 창업교육 학습목적에 부합되는 창업준비활동 및 창업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

④ ‘창업학점교류’는 학점 교류 협정을 맺은 대학 간에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창업교과로 지정된 타 대학의 교과를 수강하는 경우 학점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.

제 2 장 창업휴학

제4조(절차) 창업을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의 서류를 작성·첨부하여 대학일자리센터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, 그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한다.<개정 2017.6.19., 2020.3.9>

제5조(기간) 휴학기간은 학칙 제40조 제3항에 의거 재학 기간중 2년(4학기) 이내로 하며, 동조 제 1항에 의한 휴학 기간과는 별도로 한다

제6조(대상 및 자격요건) ① 창업 휴학을 원하는 자는 창업휴학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이전에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준비중인 자로 제9조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일자리센터 취·창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로 한다<개정 2017.6.19.,2018.6.15., 2020.3.9>

② 창업 휴학을 원하는 자는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, 본교 및 타 대학에서 개설된 창업교과를 2과목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 한정한다. 단,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하고 의미있는 매출 실현, 고용창출, 투자유치,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입상 등 우수한 창업성적을 달성한 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대학일자리센터 취·창업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.<개정 2018.6.15., 2020.3.9>

제7조(창업현장확인 및 승인) 대학일자리센터에서는 창업한 학생의 창업 현장을 방문 할 수 있으며, 창업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체의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 여하를 확인하고, 교무처는 이를 근거로 창업휴학의 승인여부를 판단한다. 또한 창업휴학을 승인 받은 학생은 년 1회 창업기업의 운영실

태를 학생경력개발센터에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17.6.19.,2020.3.9>

제8조(창업휴학 대상 업종) 창업휴학의 대상이 되는 창업은 학생 창업으로서의 적절성을 대학일자리 센터 취·창업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인정받아야 한다.<개정 2017.6.19.,2018.6.15.,2020.3.9., 2023.1.16>

제9조(제출서류) 창업 휴학을 원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① 휴학원(소정양식) 1부
- ② 사업자등록증(해당자에 한함) 1부
- ③ 법인등기부등본(해당자에 한함) 1부
- ④ 사업계획서 1부
- ⑤ 기타 창업관련 증빙 서류

제 3 장 창업대체학점

제10조(대상 및 구분)

- ① 학점인정 대상은 창업(준비)활동이 실시되는 해당 정규학기를 등록하고 2개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으로 한다. <개정2018.6.15., 2020.3.9>
- ② ‘창업실습’학점은 실제 창업활동 이전에 실시하는 수업활동 및 이에 준하는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하여 인정한다.
- ③ ‘창업현장실습’은 실제 창업한 경우에 학칙 제3조에 따른 수업연한에 포함되는 1개 학기 동안의 창업활동에 대하여 인정한다. <개정2018.6.15.>

제11조(창업대체학점 인정의 창업활동)

- ①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창업활동으로서의 적절성을 창업전담교수의 승인을 통해 인정받아야 한다.<개정2017.6.19.,2018.6.15.,2020.3.9.,2023.1.16.>
- ② ‘창업실습’교과가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학내 창업전담교수의 지도보고서(학기별 5회 이상의 지도)와 최종 평가표, 학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2018.6.15.,2020.3.9>
- ③ ‘창업현장실습’교과가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업전담교수의 지도보고서(학기별 5회 이상의 지도)와 최종 평가표, 학생의 결과보고서, 사업장 운영실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6.19., 2020.3.9>

제12조(신청 및 승인) ① ‘창업실습’ 교과목의 신청은 <별지서식 1. 창업(현장)실습 신청서>,<별지서식 2. KAU 창업활동 계획서>를 작성하여 대학일자리센터의 확인 및 승인을 거친 후 <별지서식 1>은 교무처에 <별지서식 2>는 대학일자리센터에 제출한다. <개정 2017.6.19.,2020.3.9>

② ‘창업현장실습’교과목의 신청은 창업 이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절차는 동조 제1항과 같다.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으로 학점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창업현장실습 기간에 지속적으로 창업활동이 이루어져야한다.

③ ‘창업실습’ 및 ‘창업현장실습’ 과목은 정규학기에 수강신청 기준 학점 이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.<신설 2018.6.15>

제13조(이수학점) ‘창업실습’ 교과목은 한 학기 3학점이하 재학기간 최대 6학점까지로하며,‘창업현장실

습'교과는 한 학기 6학점이하, 재학기간 최대 12학점까지로 한다. 단, 창업현장이 해당학기에 폐업할 경우'창업현장실습'교과의 이수학점은 미이수처리한다.

제14조(학점부여) ① 창업전담 담당교수는 발표평가와 현장점검 등을 통해 '창업실습'및 '창업현장실습'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여 학점을 부여한다.

② '창업실습' 및 '창업현장실습'은 이수구분 없이 Pass(P)/No Pass(NP)로 판정하여 학점만 인정한다.

③ 창업전담 담당교수가 학생 평가에 활용한 창업활동 계획서, 지도보고서, 최종 평가표, 결과보고서, 사업장 운영실태 보고서 등 평가 근거자료 일체는 일반 강좌의 출석부, 과제, 시험답안지 등과 동일하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8.6.15., 2020.3.9]

제15조(창업실습교과 지도교수 평가) '창업실습교과' 지도교수의 교육 시수는 '창업실습' 교과목의 경우 50%, '창업현장실습'의 경우 현장실습수준의 시수로 교원업적평가 교육영역에서 인정할 수 있다.

제 4 장 창업학점교류

제16조(창업학점교류) 본 대학 및 학점교류협정이 체결된 대학에서 개설되는 창업 강좌를 수강할 수 있으며, 교류학점인정에 대하여는 학칙 시행세칙 제11조에 의한다.

제17조(자격) 창업학점교류학생의 자격은 대학 학점교류 신청자격을 준용한다.<개정2018.6.15>

제18조(수강범위)① 학기 중에 개설되어 있는 창업교과로 한다.

② 창업학점교류학생은 학기당 3학점 이내 재학기간 최대 6학점까지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2018.6.15>

제19조(수강료 납부) ① 수강료는 교류 대학교간 협정에 근거하여 정하며, 자세한 사항은 학점교류지침에 따른다.

② 교류 학생의 교류기간에 필요한 수강료 이외의 비용일체는 학생 본인이 부담한다.

제20조(취득학점 인정)

① 창업학점교류학생이 취득한 성적(학점)의 인정은 학칙 시행세칙 제11조에 의해 본교 취득학점으로 대체할 수 있다

② 창업학점교류 시 이미 이수한 동일 과목의 성적(학점)취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8.6.15>

③ 학점 교류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표기하고 평균평점 및 전체취득학점에 합산한다.

④ 학점교류시 본 대학 및 타 대학에서 개설된 창업교과는 “강좌명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(기업가정신, 창업, 사업, 지식재산권(특허))등을 포함한 교과”이어야 하며, 이외의 강좌는 창업교과로 인정되지 않는다.

제21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항공대학교 학칙 및 동 시행세칙, 교육부 '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메뉴얼' 등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① (시행일) 이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 (적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내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하되, 2017년 3월 1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3월 1부터 적용한다.
4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3월 9일부터 시행하되, 2020년 3월 1부터 적용한다.
5.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2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되,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<별표 1> <삭제 2023.1.16.>

<별지서식3>

20 - () 학기 창업활동 성과평가

※ 성과평가보고서는 총 10페이지 이내로 작성. 필요 시 사진, 도표 등 삽입 가능.

1. 도전과제 내용

2. 도전과제 성과(팀일 경우 팀 성과와 개인 성과를 구분하여 기술)

가. 팀 성과

나. 개인 성과

다. 팀원 별 업무분장 내역

No.	학과	성명	담당 업무
1			
2			
3			

3. 도전과 관련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결과물

4. 도전과제 실행내역(팀 활동을 수행한 경우 개인의 역할을 자세히 기술)

주차	팀 목표 및 활동	개인 목표 및 활동	투입시간
1주차			
2주차			
3주차			
4주차			
5주차			
6주차			
7주차			
8주차			
9주차			
10주차			
11주차			
12주차			
13주차			
14주차			
15주차			

5. 창업(준비)활동 소감